



질의회신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관련

질의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을 협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은 행정계획 단계로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개발계획 단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결정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통보 받았음.

질의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도 되는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은 계획 결정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

업 비교2에 의하면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선행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임.

질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협의대상 중 개발사업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으로 되어 있음. 정비사업이라 함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나뉘어 짐. 가와 다는 사전재해 대상이 아니라 판단이 됨.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인데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음. 만약, 아파트로 재건축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인 우수계획이 기존우수관로가 아닌 계획우수관로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6조에 의거 1,299㎡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하려는 경우임.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5,000㎡미만 일지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1.행정계획 비교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질 의

1. 기 협의완료(2008. 10)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계획내용에 포함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금회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상위계획(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였으므로, 금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시 행정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진행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도 되는지?

2.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행정계획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협의를 이행하였다 해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개발사업) 대상임.

-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질 의

국토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시 도시관리계획(도축장)결정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항(행정계획)에 동법 제26조는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음. 비교의 내용을 보면 가목4) 30조의 해당사항 중 부지면적이 5,000㎡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으로 대어 있는데... 이법령을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거하여 5,000㎡를 초과하면 협의대상인지?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1.행정계획 비교2, “다”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협의 대상임.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입안의 제안’ 임.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시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혼재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1. 행정계획, 비교2의 “나”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혼재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경우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의 규정에 의거「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에는 계획의 내용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농어촌정비법」 제52

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인지?

답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계획 및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계획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지자체 공원에 관한 사전재해 개발단계를 수행 중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차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함. 이와 같이 두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실시계획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협의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 비교2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05.3.21)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하여,

- 스포츠타운 내 일부 부지(8,970㎡)에 테니스장 건립하고자 세부시설 변경결정(○○시, '09.4.13)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조에 제1항 별표1, 2호(개발계획)의 비고1호 규정에 의거
 - 금번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당초 부지면적의 증가는 없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